

#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.

제 출 자 : 동작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 제3항 시·군·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위임 사항중 위원의 해촉 사항이 추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요업무(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심의)를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촉위원 해촉 사항 신설 (안 제3조의1)
- 나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 신설 (안 제6조의3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<p><b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</b> 제20조(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)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.~5. (생략) ② (생략)</p> <p><b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</b> 제51조(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</p>
--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15. 12. 10 ~ 12. 30 (20일간)
- 2) 규제사무 중 중요규제 사항 없음
- 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의견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: 의견없음

###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1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위원이 제6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조사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의1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li> <li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</li> <li>3.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li> <li>5. 위원이 제6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/ol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li> <li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li> <li>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조사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li> <li>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</li> <li>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이 감정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	<p>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</p> <p>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p>